

# 2024년 「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
(사)한국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「2024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」에 참여하실 충청북도 소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## 【 아 래 】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
모집기간	2024. 2. 1. (목) ~ 예산 소진 시까지
대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 (제조분야) *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여야 함</li> <li>· 충청북도 소재 중견기업 (제조분야) *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여야 함</li> <li>· 충청북도 소재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*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·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이어야 함</li> <li>· 충청북도 소재 사회적 경제기업 *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가·나·다·라·마·바목에 해당하여야 함</li> </ul>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충청북도 및 인근 시·도에 거주하는 만20세 ~ 75세 이하 단시간(1일 4~6시간) 근로자 신규채용*시 인건비 일부(최저시급의 40%→15,800원/1일) 지급</li> <li>* (사)한국산업진흥협회를 통한 구인·구직 연계자</li> <li>· 3개월 이상 고용 후 참여자 60일 이상 근로시 근속 인센티브 200,000원 지급</li> </ul>
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(기업용) 1부 [붙임 서식1]</li> <li>2. 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[붙임 서식2]</li> <li>3. 참여 요건 확인서 및 참여 협약서 각 1부 [붙임 서식3, 4]</li> <li>4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(신청일 기준)</li> <li>5.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</li> <li>6.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1부(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<a href="https://sminfo.mss.go.kr">https://sminfo.mss.go.kr</a> 에서 발급가능) ※ 위 서류는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지연됩니다.</li> <li>7. 사회복지서비스업·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 1부 (해당시)</li> </ol>
접수방법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편: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99(문화동) 2층. (사)한국산업진흥협회</li> <li>- 이메일: <a href="mailto:koida@koida.or.kr">koida@koida.or.kr</a> / 홈페이지: <a href="http://www.koida.or.kr">www.koida.or.kr</a> (협회소식&gt;공지사항)</li> </ul> <p>※ 메일 제목에 '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신청' 명시</p> <p>※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 ☎ 043) 222-0801</p>

<p><b>진행절차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차 : 서류심사 (제출서류 및 참여 요건 등 확인)</li> <li>· 2차 : 참여자 연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참여자 연계시 기업 요구에 따라 면접을 진행할 수 있으며, 참여자가 연계되지 않은 (해당 기업에 근로 희망자가 없을 경우) 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</li> <li>※ 연계가 확정된 기업은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(270일 이내)</li> </ul> </li> </ul>
<p><b>지원요건</b>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상호 합의된 대상자와 1일 4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하고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을 해야 함.</li> <li>2.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신규 채용 근로자 포함 총 근로자수(고용보험 가입기준)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신청 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상 인원수를 기준하며 인원 변동 시 관련 서류 제출</li> </ul> </li> <li>3.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안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이후 확인 되더라도, 그 승인은 취소되며,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'부당이득'으로 환수 조치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자발적 퇴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로 사유 확인 제외</li> </ul> </li> <li>4. 다른 재정일자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타 일자리 안정자금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반환하여야 함</li> </ul> </li> </ol>
<p><b>지원한도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연인원 3,600명 이내</b> * 단, 1인당 근로일 270일 이내</li> <li>▷ (예시) 13명 × 270일 = 3,510명 👁 가능</li> <li>1명 × 365일(270일 초과) = 365명 👁 불가</li> <li>15명 × 270일 = 4,050명 👁 불가</li> </ul>
<p><b>유의사항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</u></li> <li>· 기업당 최대 3,600명까지 지원가능(참여자와 미연계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)</li> <li>· 기업에서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지급 후 지원금 신청</li> <li>· 신청일 기준 기채용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불가</li> <li>· 2024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서류 중 사업장(주)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</li> <li>※ <b>참여제외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서 제출일 전 2개월 이내에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업주</li> <li>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</li> <li>- 고용보험·건강보험·산재보험·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</li> </ul> </li> </ul>